

제 호
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(창업기업) 선정서

1. 기 업 명:
2. 대 표 자:
3. 주 소:
4. 유효기간: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제2항,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
위 기업을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(창업기업)으로 선정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